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3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이헌승·김병욱·김정재

김미애 • 전봉민 • 이주환

홍석준 • 윤상현 • 최형두

김기현 · 황운하 · 한준호

박홍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보유 생물의 서식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원에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함을 악용하여 동물의고유한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서식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적정한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 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 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질병 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7의2. 제6조에 따른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

제6조 중 "영양분"을 "사육 공간 조성, 영양분"으로, "적정한"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에 따른 서식환경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이 폐사하 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제3조(등록 등) ①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	
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	
다. 다만, <u>제3호 및 제5호</u> 에 대	<u>제3호, 제5호</u>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및 제7호의2</u>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제6조에 따른 적정한 서
	식환경 제공 계획
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	8
통 <u>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u>	질병 관리계획, 안전
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	관리계획
<u>획</u> ,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	
종의 특성에 맞는 <u>영양분</u> 공급,	<u>사육 공간 조</u>
질병 치료 등 <u>적정한</u> 서식환경	<u>성, 영양분</u> 대통령령으로

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략)

② (생 략)

<u>정하는 적정한</u>
제18조(과태료)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조에 따른 서식환경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
이 폐사하게 한 자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